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년 7월 1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6년 7월 5일
- 상정일자 : 제24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년 7월 21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이상길)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차량등록사업소장과 구청장·군수 및 소속 공무원에게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함(안 제3조).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
-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제10조).
-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기존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의 대부분을 삭제함.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석동)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바탕으로,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 반영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어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시·도, 지방세연구원이 2차에 걸친 합동작업을 통해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여 2015년 8월 시·도에 통보한 바 있음.

▶ 또한, 2016년 1월 징수체계개편<sup>2)</sup>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기존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대폭 삭제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임.

2) ‘지방세기본법’에서 기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 조문을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명시

○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본안을 토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